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 칭 :

2. 대표자 :

3. 소재지 :

4. 인력양성 분야 :

「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